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25

발의연월일: 2024. 7. 29.

발 의 자:조승환·김성원·서일준

이종배 · 김장겸 · 김태호

김승수 · 이성권 · 안철수

유용원 • 곽규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에 일몰기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도래할 예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제1항 및 제75조의5제1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 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등에 대한 감면) ①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	
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	
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	
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에 따라 <u>2024년 12월 31일</u> 까지	<u>2030년 12월 31일</u>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	
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	
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	
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u>2024년 12</u>	<u>2030년 12</u>
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	월 31일
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	
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 1. ~ 4. (생략)
- ② · ③ (생 략)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 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 1. <u>2025년 12월 31일</u>까지 취득 세를 면제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 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1. 2030년 12월 31일
2
<u>2030년 12</u>
월 31일

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 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7 -